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회의 등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또는 의사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되는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에 대한 수당) ①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석 시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안전검토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석수당 : 15만원(서면심사 10만원) 단,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추가 지급

2., 안전검토사례금 : 20만원(50건 미만), 40만원(50건 이상 100건 미만), 60만원(100건 이상)

제11조(중전의 제10조)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p>	<p>제9조(회의 등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또는 의사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그 밖에 공개되는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li> </ol>
<p>&lt;신 설&gt;</p>	<p>제10조(위원에 대한 수당) ①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석 시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안전검토사례금을 지급할 수</p>

<p><u>제10조</u>(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2조부 터 <u>제9조</u>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p> <p><u>제11조</u> (생 략)</p>	<p>있다.</p> <p><u>② 제1항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참석수당 : 15만원(서면심사 10만원) 단, 2시간 이상인 경 우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추 가 지급</u></p> <p><u>2., 안전검토사례금 : 20만원(50 건 미만), 40만원(50건 이상 1 00건 미만), 60만원(100건 이 상)</u></p> <p><u>제11조</u>(분과위원회) ----- ----- -- <u>제10조</u>----- --.</p> <p><u>제12조</u> (현행 제11조와 같음)</p>
--	--